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51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 송재봉ㆍ이기헌ㆍ김우영

이병진 · 소병훈 · 권칠승

이수진 • 이광희 • 김남희

임호선 · 서미화 · 오세희

박홍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,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이격거리를 두고 있음.

그런데,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의 위축과 신·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 · 재생에너지발전시설

(태양광)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광)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,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3(태양광 설비의 입지) ①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다.
 - 1.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
 - 2. 제27조의2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 에 참여하여 관할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
 - ② 그 밖에 태양광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7조의3(태양광 설비의 입지)
	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
	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
	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
	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
	<u>정할 수 없다.</u>
	1.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자는 자의 부지
	및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
	<u>치하는 경우</u>
	2. 제27조의2에 따른 신·재생
	에너지 발전사업 중 태양광
	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관할 지
	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
	<u>경우</u>
	② 그 밖에 태양광 설비의 입
	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